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P-메틸아미노페놀 황산염(4-Methylaminophenol sulfate)
Section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	P-메틸아미노페놀 황산염(4-Methylaminophenol sulfate)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본 제품은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공급자 정보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6번길 117(모곡동)
긴급전화번호 : 031-668-0700/3	담당부서 : 안전환경팀
인터넷 주소 : http://www.samchun.com	

Section 2 – 유해성 · 위험성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구분4
	피부 과민성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2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나.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 고

◦유해위험 문구

H302 삼키면 유해함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신장,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260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대응 P330 입을 씻어내시오.
P301+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Section 4. 응급조치 요령에 따라) 처치를 하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33+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화재의 위험이 크고 흡입 및 피부 접촉시 유해하며 자극적임.

Section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P-메틸아미노페놀 황산염 (4-Methylaminophenol sulfate)	p-Mehylaminophenol sulfate	55-55-0	99 ~ 100
물(Water)		7732-18-5	0 ~ 1

Section 4 – 응급조치 요령

가.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나.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
다.흡입했을 때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라.먹었을 때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마.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Section 5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적절한(및 부적절한)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등.
 부적절한 소화제:자료없음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다.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등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화재진압을 하고 불가능시 즉각 철수 할 것.
 진화가 된 후이라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관계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Section 6 –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 흡입과 피부 접촉을 피하고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호흡기 착용 및 환기시키고 발화원을 제거할 것.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유출방지를 최소화하고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다.정화 또는 제거방법 유출물질은 용기에 보관하여 회수할 것.

Section 7 – 취급 및 저장방법

가.안전취급요령 피부접촉, 흡입 및 눈에 침입 방지할 것.
나.안전한 저장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보관용기는 밀봉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 환기가 잘되는 곳에 저장할 것. 혼합금지물질과 격리시킬 것.
 공기에 노출시 변색됨.

Section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자료없음
나.적절한 공학적 관리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시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다.개인보호구
 ◦호흡기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 시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마스크 혹은 방진필터를 결합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할 것
 호흡용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할 것
 작업환경에 따라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것
 ◦눈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시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

마.기타 유해영향 자료없음

Section 13 – 폐기시 주의사항

가.폐기방법 적용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나.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하여 폐기할 것.

Section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유엔번호 2811
나.유엔적정 선적명 Toxic solid organic, N.O.S
다.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독물)
라.용기등급 III
마.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자료없음
바.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
 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
 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
 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F-A
 유출시 비상조치:S-F

Section 15 – 법적 규제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나.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폐기물관리법 해당없음
마.기타 국내 및 외국법 EU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Xn;R22-48/22R43N;R50-53
 EU분류정보(위험문구):R22,R43,R48/22,R50/53
 EU분류정보(안전문구):S2,S36/37,S46,S60,S61

Section 16 – 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정보, 한국소
 방산업기술원 화학물질정보,
나.최초작성일자 2002. 7. 30
다.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6 / 2019.01.03
라.기타
 * 이 MSDS는 작성시 당사의 전문지식, 최신정보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성 분류결과는 인용된 참고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주어진 정보는 안전한 취급,사용,공정,저장,
 운송,폐기 등에 관한 안내 자료일 뿐이며 제품의 질적 특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음.